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6년 9월호

1. 법률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나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

1. 법률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등)

1. 법률*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6/8/18 개정 · 2027/2/19)

1) 개정 이유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6. 2. 19. 공포, 8. 2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 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,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

2) 주요 내용

-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(제10조의10 제1호)
 -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여 정보제공의무(트래블룰)는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,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
 - (기존)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
 - (개정) 금액에 관계 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(제10조의11 제2항 · 제3항 신설)
 -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
 -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,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정함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(제10조의12 제5항 · 제7항 및 별표 1 신설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가상자산사업자(임원·대표자, 대주주 포함)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
 - (가상자산사업자) 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,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,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, 등록 등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
 - (임원과 대표자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 - (대주주)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(내국법인),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며(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)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-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·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,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·사무장비·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,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·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
-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,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

□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범위 확대(제10조의20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)

-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(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규정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(2026/8/19 개정 · 2026/8/20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6. 2. 19. 공포, 8. 20. 시행)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규정(제23조의2)
 -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,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
- ☐ 대주주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구체화(제27조 제3항 · 제4항)
 - 가사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
- ☐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변경(제27조 제6항)
 - 변경신고 사항 중 대주주 및 적절하 조직 · 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· 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
- ☐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변경(제27조 제6항)
 - 변경신고 사항 중 대주주 및 적절한 조직 · 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· 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,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26조, 제28조의2, 제31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(제27조 제8항·제9항 및 별표2·별표3)

-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과 조직·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□ 외국 가상자산사업자, 개인지갑과 거래 시 거래허용기준 등을 규정(제28조의2)

-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허용기준을 규정하고,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평가의무를 구체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ETF · 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단일종목 ETF · ETN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 확대)
-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(2026/8/18 개정 · 2026/8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 - ‘관계기관 합동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(ETF · ETN) 보완방안 마련’(금융위 보도자료, 2026.7.16)

2) 주요 내용

- ETF · 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(제20조의4)
 - ETF · ETN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괴리율 요건을 강화(국내 2%, 해외 5%)하여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, 괴리율 계산식을 명확화
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관련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(제87조의2)
 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관련 기본예탁금 적용 시 대용증권 불인정(현금에 한하여 허용)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8/18 개정 · 2026/8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확대 등과 더불어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‘관계기관 합동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(ETF·ETN) 보완방안 마련’(금융위 보도자료, 2026.7.16)

2) 주요 내용

□ 단일종목 ETF·ETN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 확대(제33조)

- 단일종목 ETF 매매단위수량 20주로 확대
- 단일종목 ETN 매매단위수량 20증권으로 확대

□ ETF·ETN 괴리율 관리 체계 개선(제31조의3, 제40조, 제134조의5, 제134조의6, 제134조의7)

- 고의,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축소 및 관련 인용조문 정비
 - (기존 : 3단계) 적출 → 지정예고 → 지정
 - (개정 : 2단계) 적출 및 지정예고 → 지정
- 괴리율 계산식 구체화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
 -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계산

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·ETN 관련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화(제108조)

- 개인인 위탁자로부터 ETF·ETN의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모의거래과정(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일 종목상품 모의거래과정)의 이수하도록 의무화

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8/2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가총액 미달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(제45조의2·제48조 제13항)

- 유상증자·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,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권리락·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

- 기존 시가총액 미달 여부는 상장시가총액(상장주식수 기준)을 기준으로 판단하나, 주식이 발행은 되었으나 추가상장되기 전 시가총액 과소 계상 우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사전 모의 거래과정 이수)
 나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외화증권거래설명서 외 5개 설명서 예금자보호안내문 등 반영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8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신규 거래를 위한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추진함에 따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시 모의거래과정 이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함
 — ‘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(7.16일 · 7.29일) 후속조치 관련’(금융위, 2026.8.12)

2) 주요 내용

-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사전 모의거래과정 이수(제4-12조)
 — 일반투자자가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시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
 • 기존 국내상장 또는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에 투자하는 경우 모의거래과정 추가 이수 의무 면제(부칙 제2조)
 •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름
-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 기본예탁금 적용기준 협회 통지 등(제4-13조)
 —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의 제정 · 개정시 사전에 공표하고, 7 매매거래일 이내에 협회에 통지하도록 규정
 •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을 준용하여 반영(2026.7.30)한 바 있으며, 동일한 내용이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도 신설됨에 따라 준용 조문 추가정비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·ETN의 기본예탁금적용기준 제정·개정시에는 한국거래소에 통지(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111조의3 제3항)

나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2026/8/25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한도 상향(5천만원→1억원)에 따른 예금자보호 안내체계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(2025.8.)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- 「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·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(2026.9.1 시행)
 - 기존 임의사항이었던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로고 표시를 의무화

2) 주요 내용

- 외화증권거래설명서 외 5개 설명서에 예금자보호안내문 및 예금보호록(비보호금융상품) 반영
 -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핵심설명서,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,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,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,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